

변경 대비 표

1. 대상펀드:

no.	펀드명	모자형 전환	운용역 변경	고유재산 투자
1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G1호(주식)	○	○	-
2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 G1호(주식)	○	○	-
3	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 G1호(주식)	○	○	-
4	미래에셋코스닥150레버리지1.5증권투자신탁1호(주식-파생재간접형)	-	-	○
5	미래에셋다이나믹단기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(H)(채권-재간접형)	-	-	○

2. 효력발생일: 2017년 12월 20일 (수)

3. 변경사항:

- 1)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
- 2) 운용역 변경
- 3)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추가

4. 변경내용

<투자신탁 명칭 변경 및 모자형 구조로의 변경>

변경 전	변경 후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 <u>자</u> 투자신탁G1호(주식)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 <u>자</u> 투자신탁G1호(주식)
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	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 <u>자</u> 투자신탁G1호(주식)

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	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모투자신탁G(주식),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모투자신탁G(주식)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 <u>자</u> 투자신탁G1호(주식)	합산하여 80% 이상

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	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모투자신탁G(주식),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G(주식)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 <u>자</u> 투자신탁G1호(주식)	합산하여 80% 이상

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	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모투자신탁G(주식)
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자투자신탁G1호(주식)	80% 이상

<운용역 변경>

<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>

<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>

변경 전	변경 후
구용덕, 목대균	송진용

<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>

변경 전	변경 후
조일웅, 목대균	송진용

<집합투자규약>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조(용어의 정의)	1.~7. <생략> 8. <신설>	1.~7. <현행과 동일> 8. “모자형”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 (모집합투자기구)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 <생략> ② <생략> 1.~5.<생략> 6. <신설> ③ <생략> ④ <신설> ⑤ <신설>	① <현행과 동일> ② <현행과 동일> 1.~5.<현행과 동일> 6. 모자형 ③ <현행과 동일> ④<현행과 동일>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> 1.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모투자신탁G(주식)

		<p>2. <u>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모투자신탁 G(주식)</u></p> <p><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G1호 (주식)></p> <p>1. <u>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모투자신탁 G(주식)</u></p> <p>2. <u>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 G(주식)</u></p> <p><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></p> <p>1. <u>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모투자신탁 G(주식)</u></p>
<p>제 16 조(투자 목적)</p>	<p>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 17 조(투자 대상자산 등)</p>	<p>(생략)</p>	<p>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</p> <p>2.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
<p>제 18 조(투자 대상자산 취득 한도)</p>	<p>(생략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<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G1호 (주식)></p> <p><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G1호 (주식)></p> <p>1. 제3조제5항제1호 및 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2.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서의 운용</p>

		<p>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 다만,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내에서 20%를 초과할 수 있다.</p> <p><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></p> <p>1. 제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2.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에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 다만,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내에서 20%를 초과할 수 있다.</p>
<p>제 19 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p>	<p>(생략)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.</p> <p>가.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</p> <p>나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제 20 조(한도 및 제한의 예</p>	<p>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</p>	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</p>

<p>외)</p>	<p>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 내지 제9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.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.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<p>③제19조제2호 가목 및 나목, 제3호 본문,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</p>	<p>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<좌동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~⑥ <삭제></p>
-----------	---	---

	<p>니한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(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(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</p> <p>2. 법 제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이하 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”라 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집합투자증권(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)</p> <p>가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</p> <p>나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(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)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</p> <p>다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</p> <p>3.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</p>	
--	--	--

	<p>다른 집합투자업자(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)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)</p> <p>⑤제19조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(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)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(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)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⑥제19조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(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)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(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)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p>	
<p>제 25 조의 2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 수)</p>	<p><신설></p>	<p><u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</u></p>

		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.
제 26 조의 2 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 매청구)	<신설>	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 27 조(환매 가격 및 환매 방법)	①~③ <생략>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 <u>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</u> 할 수 있다.	①~③ <현행과 동일>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 <u>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</u> 할 수 있다.
제 30 조(기준 가격 산정 및 공고)	①<생략>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[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]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	①<현행과 동일>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(<u>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</u>)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[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]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
제 37 조(수익 자총회)	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. ②~⑨ <생략> ⑩ <신설>	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<u>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</u>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. ②~⑨ <현행과 동일 > ⑩ <u>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,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</u>

	⑪ <생략>	<p><u>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⑪ <현행과 동일></p>
제 39 조의 2(업무위탁에 대한 보수 지급)	<신설>	<p><u>집합투자업자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한 모투자신탁업무에 대한 보수를 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집합투자업자 보수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제 39 조의 3(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)	<신설>	<p>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 대비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된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에서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</u></p>
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① <생략>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5. <생략></p> <p>③~④ <생략>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⑥~⑫ <생략></p>	<p>① <현행과 동일>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<u>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</u>)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5. <현행과 동일></p> <p>③~④ <현행과 동일>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(<u>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</u>)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⑥~⑫ <현행과 동일></p>

<투자설명서>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<p><투자목적></p>	<p>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 수익 등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	<p>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이자 수익 등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
<p><투자전략></p>	<p>①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며 40% 이하로 해외 주식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이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는 각국의 정치, 경제적 상황 및 시장의 밸류에이션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그 투자 의사 결정 및 배분 비중이 결정됩니다.</p> <p>② 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.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④ 해외 투자는 운용전략상 펀드의 규모가 상당 수준이 될 경우에 그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게 됩니다. 따라서 상황에 따라 해외 자산에는 상당 기간 투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p>	<p><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G1호(주식)></p> <p>① 이 투자신탁은 "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모투자신탁 G(주식)", "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모투자신탁 G(주식)"에 80% 이상으로 투자합니다.</p> <p>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.</p> <p><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></p> <p>① 이 투자신탁은 "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모투자신탁 G(주식)", "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 G(주식)"에 80% 이상으로 투자합니다.</p> <p>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.</p> <p><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></p> <p>① 이 투자신탁은 "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모투자신탁 G(주식)"에 80% 이상으로 투자합니다.</p> <p>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.</p>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